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권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9
----------	-----

발의연월일 : 2020. 6. 10.

발 의 자 : 권철승·장경태·정춘숙
전용기·강병원·한병도
유정주·박 정·송갑석
김철민·박광온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양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초등학생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 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고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각 지자체 마다 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돌봄의 공백은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이에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

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 나.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 라. 지역의 온종일 돌봄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온종일 돌봄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돌봄협의회를 둠(안 제7조 및 제8조).
- 마. 온종일 돌봄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간식 및 급식 지원, 특기적성 및 역량 개발 지원 등을 의미함(안 제9조).
- 바. 온종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기준,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안 제10조).
- 사.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교육부장관은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온종일 돌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13조).

차.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자는 기초수급자, 한부모·다문화가족, 장애인 및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4조).

카.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자는 보호자에게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안 제15조).

타. 온종일 돌봄시설의 현황, 시설별 온종일 돌봄의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시설 및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체계적인 온종일 돌봄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단계 학령기(學齡期) 아동”이란 초등학교 교육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에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어려운 시간에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되는 제9조의 교육·보호 등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 가.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학교 내 시설
 - 나.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 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온종일 돌봄과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온
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의 온종일
돌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
관별로 5년마다 온종일 돌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온종일 돌봄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 및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

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정부조직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을 총괄·조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온종일 돌봄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온종일 돌봄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
4. 온종일 돌봄의 예산 지원 방안
5.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 방안
6. 그 밖에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사항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도 교육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시행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관할구역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온종일 돌봄의 수요·공급의 변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시행, 제3항에 따른 변경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광역돌봄협의회) ①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온종일 돌봄에 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광역돌봄협의회를 둔다.

② 광역돌봄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온종일 돌봄 관련 전문가,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자 등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임명·위촉한다.

③ 광역돌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기초돌봄협의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온종일 돌봄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온종일 돌봄시설 간 협력 증진, 온종일 돌봄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의 조사 등을 위하여 기초돌봄협의회를 둔다.

② 기초돌봄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온종일 돌봄 관련 전문가, 관할 지역 내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위촉한다.

③ 기초돌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온종일 돌봄)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보호 등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안전한 보호
2. 간식 및 급식 지원
3. 특기적성 및 역량 개발 지원
4. 체험 및 놀이활동 지원
5. 생활상담 등 정서적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보호

제10조(온종일 돌봄시설 운영 등) ① 온종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9조에 따른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데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 기준,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종

일 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온종일 돌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2. 온종일 돌봄시설 간의 연계 및 협력 지원
3. 온종일 돌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4. 온종일 돌봄 관련 정보의 제공, 홍보 및 교육
5.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온종일 돌봄 관련 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지원
7. 광역돌봄협의회 및 기초돌봄협의회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분석 지원
8.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교육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구역에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는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온종일 돌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온종일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온종일 돌봄의 우선 제공) 온종일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7.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8. 그 밖에 교사가 추천하는 아동(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에서 온종일 돌봄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보호자의 비용 부담) 온종일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의 보호자에게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현황, 시설별 온종일 돌봄의 내용 등 온종일 돌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비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온종일 돌봄시설, 지원센터 및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